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도시건설위원회(도시관리국)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36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출 자 | 임현주 의원 외 5명(2023. 11. 7.) |
| 의 안 명 |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
| 검 토   | 전문위원 이선하                  |

## 1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회의록 공개 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)
- 나. 인용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(안 제1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의2<sup>1)</sup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<sup>2)</sup>

- 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의2(회의록의 공개)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·장소·안건·내용·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3조의3(회의록의 공개)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,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11. 7. ~ 2023. 11. 13.) : 의견없음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조례로 기간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기존 “회의록 작성 및 보관” 규정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

※ 개정조례안에 따른 회의록 공개 기간

|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(개정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심의 종결 안건 : 심의 후 30일 경과 후<br>- 심의 보류 안건 : 심의 후 90일 경과 후<br>- 보류 안건 재상정시 : 심의 후 30일 경과 후 | - 심의 종결 안건 : 심의 후 30일 경과 후<br>- 심의 보류 안건 : 심의 후 3개월 경과 후<br>- 보류 안건 재상정시 : 심의 후 30일 경과 후 |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구 권한위임사무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 없고,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, 아울러 구민의 알 권리를 높일 것으로 판단됨

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“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”란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